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27
------------	-------

발의연월일 : 2023. 7. 27.

발의자 : 지성호 · 박대수 · 김형동

김성원 · 이태규 · 김석기

김희곤 · 유상범 · 김승수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 개축 ·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의무를,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 · 운영 의무를 두면서 각 시설의 설치 결과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완공 이후 그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새롭게 설치된 중수도 등 공공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중수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그러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그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 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라. 중수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을 “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을 “하려는”으로,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제1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

항) 중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으로, “제5항”를 “제6항”으로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 ·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9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빗물 처리용량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3항”으로, “설치 결과를”을 “중수 처리용량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시장 · 군수 · 구청장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수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거나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 제2항”으로, “제7호”

를 “제3호”로, “제5항”을 “제3항 · 제6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
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
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
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
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
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
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
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시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u>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u>	
<u>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u>⑧ 시장·군수·구청장등 제5항</u>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u>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u>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하려는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
수도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
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
퍼센트 이상을 하 ·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2의2. (생 략)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
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

-----한다.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
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
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
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
의 10페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
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
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중
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등이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페
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p> <p>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등----- -----제3항----- ----- ----- -----.</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p>	

<p><u>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u>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자가 중수도를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u>⑩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u>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u>제5항</u>에 따른 시설 ·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제18조(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 · 시공업의 등록) ①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 · 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u>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 ③ (생략)</p>	----- ----- ----- ----- ----- ----- -----. <p><u>⑪ 시장 · 군수 · 구청장등</u>----- ----- -----<u>제6항</u>----- ----- ----- ----- ----- -----. 제18조(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 · 시공업의 등록) ① ----- ----- ----- ----- ----- ----<u>시장 · 군수 · 구청장등</u>-----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	---

<p>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p>	<p>----- ----- ----- ----- ----- -----.</p>
<p>1. <u>제8조제5항</u>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2. <u>제9조제6항</u>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3. ~ 5. (생 략) ② (생 략)</p>	<p>1. <u>제8조제6항</u>----- ----- 2. <u>제9조제7항</u>-----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5조(청문) -----시 장·군수·구청장등----- ----- ----- -----.</p>
<p>1. · 2. (생 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28조(과태료) ① ----- ----- ----- -----.</p>
<p>1. <u>제8조제6항</u>을 위반하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이 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u>제9조제9항</u>을 위반하여 중수</p>	<p>1. <u>제8조제7항</u>----- ----- 2. <u>제9조제10항</u>-----</p>

도 설치 · 운영에 관한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 ---
3. ~ 5. (생 략)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생 략) 2. <u>제8조제4항</u> 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1. (현행과 같음) 2. <u>제8조제5항</u> ----- ----- ---
3. <u>제8조제6항</u> 을 위반하여 빗물 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u>제8조제8항</u> ----- ----- -----
4. (생 략) 5. <u>제9조제5항</u> 에 따른 시설 ·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4. (현행과 같음) 5. <u>제9조제6항</u> ----- -----
6. <u>제9조제8항</u> 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6. <u>제9조제9항</u> ----- ----- -----
7. <u>제9조제10항</u>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u>제9조제11항</u> ----- -----
8.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8. (현행과 같음) ④ ----- -----

<p>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u>제8조 제1항</u>을 위반하여 빗물 이용시설의 <u>설치 결과</u>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2. <u>제9조 제1항</u>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u>설치 결과</u>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3.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u>특별자치시장</u> · <u>특별자치도지사</u> · <u>시장</u> · <u>군수</u> · <u>구청장</u>이 부과 · 징수한다.</p>	<p>-----.</p> <p>1. <u>제8조 제2항</u> -----<u>빗물 처리용량 등을</u></p> <p>2. <u>제9조 제3항</u> -----<u>중수 처리용량 등을</u> -----</p> <p>3. (현행과 같음)</p> <p>⑤ ----- ----- ----- ---<u>시장</u> · <u>군수</u> · <u>구청장 등</u>-----</p>
---	--